

연안역 관리에 따른 어항·어촌 개발방향

# 어항중심 어촌친수공간 개발

새로운 국토개발 방식으로 접근성과 친근성을 제고

윤상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개발연구실 부연구위원

## 서론

연안역은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지역으로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며 예로부터 생산업 및 해운업 등을 통해 인간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 연안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해 옴에 따라 공업단지의 적지로서 주목받게 되었고 또한 국민경제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와 함께 관광지로서의 중요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수산업 및 해운업 분

야에서의 전통적인 수요와 더불어 공업단지, 관광지, 주거지, 쓰레기매립지 등으로 연안역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남에 따라 각 이용행위간의 상충 및 경합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서해안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간척 매립과 수산업의 갈등, 임해공단지대의 산업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증대된 해상교통량에 수반되는 유류오염 등과 인간의 생활환경 보호를 포함한 생태계 보전간의 갈등문제 등이 주요한 예가 되

겠다.

최근 국민경제의 급속한 팽창으로 연안역을 또 하나의 경제공간 즉 제2의 국토공간으로서 이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연안을 이용하여 연안을 오염만 시키는 부작용을 많이 초래하여 그 이용정도 또는 개발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친수공간 특히 어항과 어촌을 연계한 어촌친수공간을 중심으로 연안역의 개발의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안역에서의 생활정주권개발 현황

연안역관리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안역관리의 목적은 연안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안역에서 현재 까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면(面)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의 소규모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중 면단위 정주권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들은 정주생활권을 일률적으로 면단위로 국한시킴으로써 현실적 생활권과 괴리되어 있고, 대부분 면중심지에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연안어촌같은 주변권역은 사실상 투자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주권개발사업의 규모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유사하나, 권역의 중심지 개발사업으로 대부분의 어촌지역은 소외되거나 투자 우선순위에서 열위에 놓이게 되었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인 '94년 전의 정주권 개발사업중 어촌 지역 투자는 매우 미흡했다.

주요 투자부문으로는 도로정비, 주택개량, 마을 공동시설

(주로 농업시설) 등에 투자하고 있으나 재원의 대부분이 도로정비에 투자되고 있으며 생활환경개선 위주의 투자사업이다.

또한 유사한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택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면소재지에 분포하여 어항을 거점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으며 ('97까지 추진중인 94개 조성마을중 임해면 소재단지는 8개면이나 임해리 소재단지는 2개에 불과) 주요 투자부문으로는 택지조성 및 분양, 주택신축 지원 등의 사업이다.

특히 정주권개발과 유사한 오지개발계획이 있는 바 이들은 다같이 면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의 내용도 유사한데도 국내 면부의 개발을 단순히 오지와 정주권면으로 구분하여 지정되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분리 시행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 도서지역도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가지 기반이 취약한 도서지역의 현실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미미한 편이고, 도서지역이 아닌 대다수 연안의 어촌지역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주권개발 대상면과 오지개발 대상면을 제외한 도서지역 개발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집행이 되고 있으며 주요 투자부문으로는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등이다 (<표-1>참조).

따라서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면단위 정주권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등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한 어촌에 대한 체계적 개발은 난망한 실정이므로 어촌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어항개발, 인공어초 투하사업, 소득원 증대사업, 영어조합법인 운영 등 해양수산부의 각종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면정주권 사업 등 여타의 개발사업과는 상당히 특화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촌이 갖는 특수성 구현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합리성이 잘 조화되어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면정주권개발과 어촌개발을 통합된 사업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입장도 일부제시되는데 본 사업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타 부처의 개발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 어촌에 대한 특화

〈표-1〉 정주권개발, 오지개발 및 도서개발사업 비교

구분	정주권개발	오지개발	도서개발
근거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4.4.7) 및 농어촌정비법(94.12.22)	오지개발촉진법(88.12.31)	도서개발촉진법(86.12.31)
대상지역	농어촌지역개발사업면 중 오 지면을 제외한 면 : 772	오지면 400면(내무부자료 : 403) '90~'99(10개년)	408개 도서(10인 이상 상주도서)
사업기간	'90~2004(1단계)	생활기반시설(도로, 교량가설), 산	'98~2007(10개년)
사업내용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농어촌지역도로정비, 환경보전 시설 및 농어촌주택개량 및 신 축 등	업기반시설(경지정리, 양수 장),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 등), 주거환경개선(취락구조개 선), 국토보전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급수, 전기, 교통 등), 생산기반시설(소규모어장, 방조제등), 복지 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하천정비 등)
총투자액	3조339억원(양여금 1조6,083, 융자 7,363, 지방비 6,893)	7,388억원 (국비 4,326, 지방비 2,387, 민 융자675) -내무부7,388, 타부처1,385	2,551억원 (국비 및 지방비 2,525, 민 융자 26)
'96까지 실적	10,698억원 - 총투자계획의 35% (359면 착수, 165개면 완료)	4,752억원 - 총투자액의 64% (403면 3,210개 사업)	2,937억원 - 총투자액의 115% (439개 도서면, 2,833건)
'96실적	2,386억원 (70개면 신규착수, 53개면 완료)	1,064억원 (221개면 753개 사업)	526억원 (188개 도서, 358건)
'97계획	2,427억원 (62개면 착수, 54면 완료)	1,209억원 (220개면 729개 사업)	550억원 (210개 도서, 412건)

개념이 거의 퇴색해 버려 실질적인 어촌개발이 성공할 수 없어 어촌은 예전과 같이 개발에서 뒤쳐진 한계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단위 개발사업 중 실질적으로 어촌정비에 투자되는 재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유일한 설정으로 타부처 사업과 통합되는 경우 어촌에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배후권역(주로 농업지역)의 개발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이 실시되

면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업기반시설, 소득시설, 생활환경 등의 투자에는 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이외의 개별적인 수산투자만으로는 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이나 복지 시설, 소규모항 기반정비, 관광어촌개발 등 종합적인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어촌의 소외와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UR 이후 낙후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복지를 위해 설치된 농특세를 재원으로

어촌지역의 수산업 기반시설 투자, 소득원 개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주민들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며, 이제 그 가치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므로 사업의 지속적 유지와 해양수산부 차원의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6이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도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부문과 중복되는 사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기본개발계획수립

〈표-2〉 어촌종합개발경위

1단계	2단계	3단계
'88년 이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89년-'92년 어촌(계)종합개발 시범사업 추진	'94년-2004년 종합개발방식
전국	65개 어촌계	전국225개 권역중 160개 어촌계 권역 개발추진
	총 187억원 지원	총 5,432억원 투자
연계투자 미흡, 산발적투자		투자의 집중으로 어장-어촌-어항의 연계투자가능

을 통해 타부처 계획부문도 충실히 고려되고 있다.

일본은 어촌개발을 위해 수차에 걸쳐 어항어촌정비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어촌의 정주여건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현재 제9차 어항어촌정비계획('94-2001)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총 3조엔이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보완을 통한 사업확대와 지속적 어촌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안역지역에서 어촌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촌지역의 급격한 변화, 즉 자원의 고갈로 인한 생산의 정체, 어업노령인력 구조변화, 소득원 개발한계, 정주여건의 낙후, 바다의 오염가속화, 수산물 유통시장의 개방, 해양에

서 관광 휴식공간 수요증대, 어항 생산소득 위주의 시책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와 상황변화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한 어촌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과 친수공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어촌 정주권사업의 시초는 '88년이전의 새마을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사업의 범위는 전국적이였다.

그후 '89년부터 '92년까지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65개 지역에 대하여 187억원을 투자하여 어촌지역개발을 추진하였으나 UR협정으로 인하여 우리 농어촌의 피해가 어느때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94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의 재원확보로 나머지 160개 어촌계에 대하여 5,432억원을 투자하여 종합개발방식의 형태를 취하여 개발계획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

현재까지의 투자내역을 보면 '94년부터 '97년까지 총61개 지역이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다 (〈표-2〉참조).

## 어항·어촌 친수공간개발

### 친수공간의 개념

친수공간이라는 말은 어원의 역사적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친수공간이라 함은 수제선을 사이에 두고 육역과 수역을 포함한 장소를 의미한다.

육역과 수역이 교호되는 공간인 친수공간은 단순히 수변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친수 공간을 포함한 도시의 임해부를 재개발함으로써 지역환경 정비와 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도시 산업구조 및 문화구조를 재구축하는 개념이다.

친수공간의 개념을 물리적인 영역으로서 뚜렷이 한정하는 것은 법제도에 의해 개발 보전을 위해 규제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미국에서는 Coastal Zone Management Act(연안역 관리법)이나 CZM Plan(연안역 관리계획)에서 연안역에 관

하여 주의 실정에 따라 법제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수공간은 수역측에서는 수제선에서 해역까지, 육역측은 수제선에서 30m에서 8km에 이르기까지 혹은 간선도로 등과 같은 시설까지라고 하는 대략적인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해안법에서는 해안보전구역을 친수공간으로 생각할 경우 수제선에서 육역, 해역 모두 50m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수치에 의한 친수공간의 설정은 어디까지나 편의적이며 설정하지 않더라도 계획에 차질을 주지는 않지만 법제도상에서 어떤 구역을 대상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학계 연구관련분야에서는 친수공간을 이처럼 물리적인 규정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정중에 있는 연안역관리법에서는 연안역의 개념을 해안에서 육지부로 500m의 거리로 정하고 있을 예정인 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범위가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친수공간의 필요성

첫째, 정주권공간의 변화이다.

오늘날 도시의 장래성은 수많

은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다.

육역뿐만 아니라 광대한 수역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부터 신도시의 개발, 건축물에 의한 개발계획 등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일체가 된 새로운 도시상을 구축하기 위한 모색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과정에서 일부에게만 관심의 대상이었던 대도시의 친수공간이 도시개발의 사업으로서 주목을 받은 것은 최근으로, 지금까지 이해가 불분명하거나 그다지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공간이었는데, 이는 굳이 기존의 상태나 혹은 기존의 개발패턴에서 친수공간을 가진 공간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수변에 위치한 기존의 산업구조도 도시화,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도심의 친수공간에 위치했던 소위 임해형 산업은 교외의 임공형, 임인터넷인지형 산업으로, 혹은 더 넓고 깐 부지를 찾아 입지가 바뀌기 시작하여 친수공간에는 여기저기에 비교적 광대한 이전적지, 유휴지가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교외로 이전하지는 않

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재편성하며 이러한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친수공간을 다기능, 고도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구조의 변혁이 도시내 친수공간이라고 하는 개발잠재력이 높은 빈공간을 도출시켰으며,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 많은 계획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셋째, 도시경관의 변화이다. 친수공간의 개발의 배경에는 이러한 산업 경제 분야로부터 요청도 있었지만 도시거주자나 도시취업자 등의 도시생활자들이 친수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도시 외부로부터 변화의 물결과 도시내적인 공간구조의 변화는 도시내부의 경관을 변화시켰는데, 대부분 단조롭고 삭막한 고층의 도시건축물, 오염도 높은 대기상태 등 도시적 경관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도시생활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자연친화적이면서 비도시적인 경관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도시근교의 전원 지역과 더불어 친수공간은 이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적합

한 공간으로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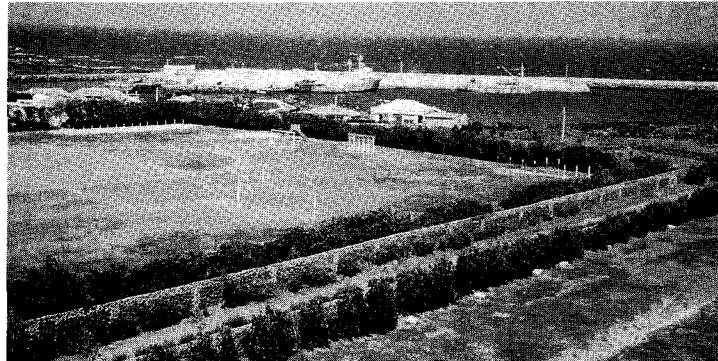
친수공간은 수변공간이라는 지리적인 의미와 함께 ‘물’과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도시생활의 활력을 주며 인공시설과 더불어 자연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친수공간이라는 기능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따라 친수공간은 ‘도시의 녹지기능 뿐만 아니라 녹지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기능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독특한 자원으로, 1차적인 수변기능인 어항활동뿐만 아니라 여타 도시활동 모두를 수용할수 있는 유연성과 규모를 가진 장소로 공업 유통 어업 등 생산적인 행위와 상업 업무 주거 레크레이션 등 전형적인 도시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모든 도시민이 이용가능한 공공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 어촌친수공간 개발

연안역지역중 특히 어촌지역에 대한 친수공간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인 바 기존의 어촌종합개발계획에서는 친수공간을 이용한 지역개발 및 관광어항개발에 따른 어촌지역의 관광지화등의 경향이 새로운 국토개발의 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촌친수공간에 대한 공간개



발은 당해 대도시급 연안역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촌지역에 대한 정주권 개발계획인 어촌종합개발계획이 대부분 이므로 이와같은 관광어촌 및 관광어항의 성립배경은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 어가소득 감소로 인한 어업외 소득원으로서의 농업소득을 제외한 관광소득의 증대, 도로망 정비에 따른 관광객의 접근성의 용이 등 국민관광객의 급속한 증가추세와 더불어 특히 해안관광지 선호현상 등으로 관광어촌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어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바다에 대한 접근성과 친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중의 하나가 어촌지역에 대한 친수공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어항개발 및 생산기반사업의 연계강화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적정권역 설정에 의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의 시행으로 권역별 어촌특성에 맞는 소득원을 개발하고,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친수공간시설을 도입한 편의복지시설 등 어촌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어촌 어항 연계개발을 위한 연안역 관리

우리나라 연안역은 해역별로 지형적 특징이 차이가 나서 서남해안은 리아스식해안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심이 얕으며 갯벌이 형성되어 있고 도서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동해안은 암반해안이 대부분이고 해빈인 모래사장이 발달하여 있으며 파도가 세며 수심도 상당히 깊은 지형이다.

또한 해안선 주변의 국도의 도로망을 끼고 주로 어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연안역에 대한 이

용은 당연히 해역별로 구분이 되는 바 서해연안은 대부분 간척 매립사업, 남해안은 주로 양식장, 동해안의 경우 관광지, 가리비 양식 및 굴 시험양식 등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은 관광지로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역지역의 공업이나 산업기반시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임해지역의 성격이 동일한 바 골고루 분포되어 서해안의 아산만공단, 대산석유화학단지, 영광원자력발전소 남해안의 평양제철소, 창원공단, 마산공단, 부산공단 동해안의 울산 온산공단 월성원자력 발전소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연안역개발로 인한 후유증은 첫째 오염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도시 주변에서는 해양오염이, 양식장 주변지역에서는 유기물오염이, 공단주변지역에서는 유류사고 등으로 오염의 종류와 정도가 연안역이용의 방법과 정도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안역 개발 사업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간척 매립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간척매립사업으로 인한 그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함

을 시화지구사업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과연 갯벌을 간척하여 농지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갯벌 그 자체가 농지조성보다 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갯벌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한번 파괴된 갯벌은 공학적으로는 약 10여년이 지난후에는 다시 갯벌이 조성된다고는 하지만 자연정화의 작용, 풍부한 어자원의 먹이창고, 관광 등의 심미적 가치 및 태풍 등의 자연해방지가 큰 갯벌의 파괴는 앞으로는 중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이상의 연안역 파괴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제정중에 있는 연안역 관리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제 도입으로 연안역 공간이용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서로 중복하고 상충되는 이용행위를 조정 통제하고 연안역통합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연안역이용의 장기적 이용질서 및 방향을 제시하고 개발과 보전의 이용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을 폐지하여 연안역관리법에 수용하여 실질적인 연안관리의 통합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며, 연안역관리계획의 수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해상레포츠, 해상관광 등 해상레저의 수요증가에 따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해일 침식 등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연안역 정비사업을 5년마다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연안역관리법 제정으로 기존의 관련법인 공유수면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항만법 등의 내용 보완 내지는 상충 등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 제정중에 있는 연안역관리법(안)은 주로 규제위주의 성격이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또 하나의 옥상옥의 형태를 띠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안역관리법(안)상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보전연안역, 준보전연안역, 개발조정연안역, 유보연안역 등으로 지정하도록 지정 기준을 세우고 각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행위제한규정을 두

〈표-3〉 연안역관리법(안)상 용도지역의 지정기준과 행위제한

구 분	지 정 기 준	행 위 제 한
보전연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자연해안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li> <li>○ 수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해역</li> <li>○ 자연경관이 수려한 연안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공작물의 신 충축</li> <li>- 개간 매립 준설</li> <li>- 토지의 형질변경</li> <li>- 흙 모래 자갈등의 채취</li> </ul> </li> <li>○ 예외적 허용 : 경미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에 위임</li> </ul> </li> <li>○ 타법령에 기고시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법령에 의함</li> </ul> </li> </ul>
준보전연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연안역</li> <li>○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어야 할 연안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환경의 심한 훼손을 가져오는 건축물의 신 충축</li> <li>○ 일정규모이상의 매립 간척</li> </ul>
개발조정연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임해공단 등 이미 고도로 개발되고 있는 연안역</li> <li>○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높은 연안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높이와 공동주택의 신축에 제한가능</li> </ul>
유보연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상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연안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규제사항 없음</li> </ul>

도록 하고 있다(〈표-3〉참조).

그러나 문제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규모로 어떠한 기준으로 지정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며 이것은 중앙연안역 관리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심의회구성에 있어서 환경단체, 어민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의 범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하여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바 사실은 일부의 이익집단의 로비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주는 쪽의 입장으로 지금 까지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된다 할

수 있겠다.

연안역관리법(안)은 규제위주보다는 생태계보전, 자연보전, 방조제관리, 청정해역(Blue Belt) 지정, 연안친수공간조성 등의 측면에서 실제 어촌 어항지역이 위치하여 있는 연안역지역에 대한 개발 및 보전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보전, 친수공간, 청정해역 등의 어항 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용도지역구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만이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보전지역도 지정이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고 친수공간도 지금까지는 주로 항만위주의 친수공간이 대부분이였으나 어촌지역 중심으로 한 친수공간의 개념도입 및 기준설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정해역도 육지부의 개발제한구역(Green Belt)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어항 어장의 보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시 청정해역을 지정하여 수자원의 남획 및 오염방지를 위한 구역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어촌지역에서의 사업활동은 결국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직결되는데 즉 생산기반시설물, 복지환경시설물 및 어민소득사업용 구조물 등을 신축 증축 개축시에도 기준이 되어 어촌을 포함한 연안역개발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연안역지역에 많이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는 어촌지역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촌지역의 관광지화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부합되는 연안역관리방법이라 사료된다.

예를들면 제주도의 해양박물관사업계획이나 강원도 속초의 관광 Expo 및 해양박물관사업

계획, 전북 부안 격포의 관광 위락시설지구계획 등은 각 연안지역의 용도지역에 부합되게 계획이 수립되면 당해 어촌 어항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되어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어촌 어항과의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지역의 재정 자립도 뿐만아니라 어민의 소득 및 고용효과, 삶의 질(QOL)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다.

###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안역 특히 어촌지역에서의 개발계획, 최근에 많이 제시되고 있는 친수공간 특히 어촌친수공간, 연안역관리법(안)상의 용도지역 및 어촌 어항지역에서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중요성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연안역개발은 근본적으로는 수산물서식지이자 어항, 항만, 임해공단 등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며 관광, 해상레저 등 다양한 휴식공간은 제공하고 있는 연안역으로 집중되는 이용 행위간의 경합을 조정 통제하고 연안지역의 특성에 부합될 수 있는 용도지역제의 도입으로 연안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연안환경을 보전 개선 정비할 수 있는 연안

지역 정비사업으로 연안 생태계보전 및 연안거주환경의 삶의 질 제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연안역개발은 이처럼 연안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보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서남해안은 대규모의 간척 매립사업으로 상당한 양의 갯벌이 파괴되었고 지금 현재도 파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수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안역개발 관리는 우선 기존 방조제의 확충과 보수관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농림부에서는 '98년에 5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방조제관리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바 방조제관리가 계속 사업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현재 서남해안의 연안 특히 어촌지역은 대규모의 간척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보상문제가 계속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어촌을 일명 보상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어민들이 진정 삶의 터전인 어장 상실로 인한 소송문제, 보상후의 각박한 인심세태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연안어촌지역은 결

국 어업소득의 감소로 인한 어업대체소득으로서 농업소득과 관광소득이 주요한 소득원으로서 부상하게 되는데 어촌지역에서도 농지를 소유한 어민도 한정되어 있으며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결국 관광을 중심으로 한 관광소득이 주 소득원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서는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관광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종합관광어항지정(예, 속초시 대포항) 등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연안역은 바다에 인접하여 있는 어촌친수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촌지역에 대한 생태계보전, 갯벌보전, 어촌친수공간의 확보로 인한 어촌관광지조성 등의 사업으로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사업을 위주로 개발하고 연안역관리법(안)에서도 규제위주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어촌관광지조성, 방조제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어촌관광 등의 내용도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연안역사업은 어촌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